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35
----------	-------

발의연월일 : 2022. 4. 13.

발의자 : 이용우 · 김진표 · 노웅래
송영길 · 이병훈 · 이수진
이수진(비) · 정필모 · 최기상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음.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므로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미국은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3개월 기간 내에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간 후에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3조의3 신설 및 제44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의3(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 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3개월의 기간 내에 그 매도하려는 주식의 수의 합계가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이하 “대량매도신고서”라 한다)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한 주요주주는 그 신고서의 접수일(이 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 중 늦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대량매도신고서를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46조에 제31호의2부터 제3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31의2. 제173조의3제1항에 따른 대량매도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31의3. 제1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대량매도한 자

31의4. 제17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173조의3(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3개월의 기간 내에 그 매도하려는 주식의 수의 합계가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이하 “대량매도신고서”라 한다)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한 주요주주는 그 신고서의 접수일(이 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 중 늦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p>

<p>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1.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③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대량매도신고서를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u></p> <p>제446조(벌칙) ----- ----- ----- -----.</p> <p>1. ~ 31. (현행과 같음)</p> <p><u>31의2. 제173조의3제1항에 따른 대량매도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u></p> <p><u>31의3. 제1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대량매도한 자</u></p> <p><u>31의4. 제17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한 자</u></p>
--	--

32. ~ 63. (생략)

32. ~ 63. (현행과 같음)